

## ■ 업무내용

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
Ex)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3억원 이상	6억원 이상

※[건설산업기본법]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, 기술인력 종복인정

### 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1인 -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.경력자(초급이상)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 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